

차양막 덮개(폴리카보네이트) 설치 중 떨어짐

공 사 명	○○○○사업(주) 물류센터 차양막 설치	발생일시	2020. 2. 23(일) 11:08경
재해형태	떨어짐	재해정도	사망 1명
소 재 지	경기도 광주시	공사규모	차양막 덮개 8개 설치
재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0. 02. 23.(일) 11:08분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0000산업(주) 물류창고 차양막 설치 공사현장에서, ○ 재해자(50세, 보통인부)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차양 철물(높이 약 5m)위에 올라가 차양막 덮개(폴리카보네이트)를 임팩 드라이버로 고정 시키던 중, ○ 실족하여 작업면 우측 철물 프레임 사이(덮개 미설치 구간) 개구부를 통해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 재해임. 		

재 해 상 황 도



안전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험성 평가를 통한 사전 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는 차양막 덮개 설치와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전에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등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, - 위험성을 결정하고,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·보존해야 하며 해당 작업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함. ○ 떨어짐 방지조치 철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는 차양철물 등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, 수시 이동 또는 간헐적 작업 등 고정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, 추락방호망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. ○ 보호구 착용 및 관리 감독 철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.
-------------	--